

연합사 각서 600-2

한미연합군 사령부  
부대 #15255  
군우 96205-0028

연합사 각서  
번호 600-2

1997년 4월 24일

(1997년 4월 30일지로 발효)  
인사 - 일반

조 문

부록: 본 각서의 예하 사령부 추가 부록 발행은 유엔사/연합사 사령관의 사전 승인 없이는 금지함. 참조: 연인-계-정, 부대 #15255, 군우 96205-0028.

1. 목적. 본 각서는 사령관/부사령관의 조문을 전달하기 위한 방침, 절차 및 책임 한계를 규정하는 데 있다.
2. 적용 범위. 본 각서는 한미연합군 사령부 본부에 보직된 전 장병 및 군무원에게 적용한다.
3. 관련 근거. 본 각서와 관련한 관련근거 발행물은 다음과 같음:
  - 가. 미공군교범 36-809 (생존자지원).
  - 나. 미공군교범 36-3002 (사망자업무).
  - 다. 미육군규정 600-8-1 (육군사상자운용/지원/보험).
  - 라. 한국육군규정 1-17 (영현처리).
  - 마. 한국공군규정 143-2 w/c-2 (사상자업무).
  - 바. 한국해군 인사규정 7501-75114 (사망자처리).

\* 본 각서는 1990년 8월 31일자 연합사 각서 600-2를 대체함.

## 연합사 각서 600-2

### 4. 용어 설명.

가. 친족. 아래의 우선순위에 의거한 개인적으로 가장 가까운 친척.

- (1) 배우자.
- (2) 친자, 양자, 이복인 자녀 중 연장자.
- (3) 법률상으로 타인의 보호 보장이 없는 양친 중 연장자.
- (4) 양부모.
- (5)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상의 개인적 대리인.
- (6) 양자나 이복 형제 자매 중 연장자.
- (7) 조부모 중 연장자.
- (8) 고인의 주거지역의 법률이 정하는 인척관계순에 따른 친척.

나. 친족 대표 (PNOK). 법적 친족으로서 고인과 가장 가까운 친족임. 위 항은 친족 대표를 식별하는데 사용된다. 연령순에 의거 결정된 연장자는 친족을 대표한다.

다. 양부모. 양부모란 친 부모의 지위 또는 대리, 또는 양자를 통한 부모의 지위 또는 대리를 말한다. 양부모는 군인이 18세 이전에 최소한 5년간 고인의 부모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한다.

### 5. 사망자가 연합사 본부 요원일 경우에 대한 책임, 방침 및 절차.

가. 책임

(1) 각 부서장은 소관부서요원의 사망시 이를 지휘부와 인사참모부장에게 보고(통보)해야 하며, 인사참모부장에게 제출해야 할 조문을 준비해야 한다.

## 연합사 각서600-2

(2) 인사참모부장은 관련부서를 통하여 사망 사실 및 경위를 확인하고 조문의 승인 및 서명을 지휘부에 건의 해야 한다.

(3) 비서실장은 조문을 전달한다.

### 나. 방침

(1) 조문은 고인에 대한 조의의 뜻을 전하는데 사용되며, 사망에 관련된 상황은 언급하지 않는다.

(2) 조문은 인사참모부장이 소관부서 또는 연합사내 정부 부서에서 친족대표에게 사망통보사실이 확인되기 까지는 전달하지 않는다.

(3) 조문은 연합사의 장병 및 군무원의 사망시 친족대표에게 전달한다. 단, 사망의 상황이 조문 전달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4) 조문은 통상 사령관/부사령관의 서명을 받도록 작성한다.

### 다. 절차

(1) 각 부서장은 장병 또는 군무원의 사망을 인지 즉시 지휘부와 인사참모부장에게 보고(통보)한다. 최초 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자료 불충분으로 보고가 지연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추가 정보 획득시 가능한 신속히 인사참모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가) 고인의 성명, 계급, 군번 및 소속병과.

(나) 고인의 국적

(다) 고인의 종교

(라) 친족의 성명 및 주소

(마) 조의 전달에 도움이 되는 고인의 가족에 대한 참고자료

## 연합사 각서 600-2

(바) 사망시간, 장소 및 원인

(사) 조문 작성이 부적절한 상황 기재

(2) 사망자 발생 보고(통보)를 한 다음날 일과 종료전까지 해당 부서장은 친족에게 보낼 적절한 조문을 인사참모부장에게 통보한다.

(3) 인사참모부장은 보고된 모든 사항들을 소관부서나 연합사내 정부부서에 확인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친족에게 공식사망을 통보한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인사참모부장은 조문의 승인 및 서명을 지휘부에 건의한다.

(5) 비서실은 조문을 전달해야 한다.

### 6. 연합사에 소속되지 않은 요원.

가. 연합사에 보직되지 않은 요원에 대한 조의절차는 해당 군 및 국가 기관에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사령관/부사령관은 전문이나 지휘계통을 통하여 보고받은 이후 친족이나 사망자 소속부대에 대하여 조문을 보낼 것을 원할 것이다.

나. 이러한 경우 인사참모부에서는 5나(1), 5나(4)항과 일치하는 조문을 준비해야 한다 (부록: 가. 견본 조문).

다. 조문을 완성한 다음 인사참모부는 상기 5다 (3) 및 (4)항에 명시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그후 비서실장은 조문을 전달한다.

### 7. 각군 책임 부서.

가. 미육군 인원: 8 인행사 인사근무과.

나. 미공군 인원: 용산 미공군반.

다. 미해군 인원: 주한미해군 N-1.

라. 미해병대 인원: 주한미해병 G-1.

연합사 각서 600-2

마. 한국군 인원: 인사참모부 정책과

본 각서에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미육군 양식2020 (발간물 및 양식에 관한 수정 및 건의안)을 사용하여 참조: 연인-계-정, 부대 #15255, 군우 96205-0028 로 우송 바람.

사령관을 대리하여:

주무관  
리처드 F. 티몬스  
미 육군 중장  
참모장

김영규  
한국 육군 대령  
부관처장

1. 부 록  
가. 견본 조문

배 부:  
다

특수 배부  
연인부- 5  
주한미군 통전참모부 양식관리처- 3

연합서 각서 600-2

부록 가

건본 조문

제임스 존슨 부인  
3304 실버파크 드라이브  
슈트랜드, 메릴랜드 21668

존슨 부인 귀하:

연합군사령부의 지휘관인 본인은 당신의 아들 에드워드 존슨 일병의 죽음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죽음으로 인한 부인의 고통과 슬픔에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존슨 일병의 최후의 병상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에 미력하나마 위로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부인은 존슨 일병이 조국을 위한 봉사로 순직하였다는 것과, 그러한 희생으로 나라가 더욱 강건해지며 영속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 모두 감사하고 있다는 점을 확신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별한 당신과 당신 가족에게 충심으로 우리 모두의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경 구,  
사령관 또는 부사령관  
서명